

1. 의결주문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험의 출제, 서류·실기시험 등 시험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마련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시험의 출제, 면접시험·실기시험·서류전형,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2명 이상(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)으로 하되,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·공무원·일반군무원,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시험위원의 임명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<u>시험위원 중 면접위원은 2명 이상(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 다)으로 하되,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·공무원·일 반군무원,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 야 한다.</u>	제21조의2(시험위원의 임명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<u>임용시험의 출 제, 면접시험·실기시험·서류전 형,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2 명 이상(5급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)으로 하되, 2 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 인·공무원·일반군무원,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 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.</u>